

스쿨제도에 관한 일반 규정

제정 2016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고 한다.)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스쿨제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스쿨”이라 함은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의 유사성을 바탕으로, 하나 이상의 ‘전공’, ‘학과’, ‘교육과정’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.
2. “스쿨제도”라 함은 스쿨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스쿨의 구성) ① 스쿨 운영을 위해 스쿨원장을 두고, 원장은 스쿨을 대표하고 스쿨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 스쿨 원장의 임면은 총장이 보한다.

② 스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인 ‘창의 행정실’을 하위에 구성하며, 창의 행정실에는 팀장 및 직원을 둔다.

③ 스쿨 원장은 각 ‘전공’, ‘학과’, ‘교육과정’의 운영 및 원활한 학생 교육과 지도를 위해 ‘전공 대표’ 및 ‘담당 교원’을 임명할 수 있다.

④ 필요 시 하위 조직 및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의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스쿨의 역할) 스쿨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스쿨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
2.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3. 비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
4. 학생 지도 및 관리
5. 소속 교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
6. 예산의 편성 및 집행
7. 기타 스쿨 목적에 기여하는 일반 사항

제5조(스쿨제도의 운영) ① 대학의 행정조직 및 각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쿨의 자율적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충분히 지원하고, 협조하도록 한다.

1. 예산 실링제도 : 스쿨 예산의 블록 그란트 형식의 배분 및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해 스쿨 발전 전략에 따른 최적의 예산 집행 유도
2. 유연한 학기제도 : 스쿨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기제 선택 및 집중식 수업 보장
- ② 스쿨은 대학의 교육이념의 체계 내에서, 스쿨의 발전을 도모하고 운영하도록 한다.
- ③ 대학과 스쿨은 스쿨의 발전 계획과 운영,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대학의 발전계획에 환류

한다.

제6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의 학칙을 포함한 제 규정 및 각종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에 제정한다. (2011년 3월 1일 이후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)